

산업계를 위한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

2006

ISBN: 0-662-68882-1. No.: H46-2/05-410

HC Pub.: 4401

목차

내용

산업계를 위한 화장품 라벨링 가이드.....	1
목차.....	1
서문.....	3
1. 서론	4
1.1 식품·의약품법과 화장품 규정	4
1.2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과 그 규정	5
1.3. 광고의 승인	6
1.4 라벨상에 기재하는 정보	7
2. 용어의 정의	7
3. 화장품의 분류 및 효능·효과 주장(클레임).....	14
3.1 화장품의 분류	15
3.2 허용되는 클레임과 허용되지 않는 클레임	17
4. 제품의 정체성.....	17
4.1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18
4.2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20

5. 제품의 순용량·중량	22
5.1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22
5.2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29
6. 제조사의 상호 및 주소	30
6.1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30
6.2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32
7. 예방 가능한 위험 및 주의사항	33
7.1 염모제 및 기밀 용기에 수용된 생식기용 데오드란트에 대하여 규정된 주의사항	34
7.2 기밀 금속 용기에 대하여 규정된 주의사항	37
7.3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가연성 제품에 대하여 규정된 주의사항	42
7.4 구강청결제에 대하여 규정된 경고	48
7.5 규정되지 않은 경고	48
8. 성분	50
8.1 국제화장품성분명명법(INCI) 체계	50
8.2 성분 명명법	50
8.3 라벨에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	53
8.4 성분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제품	55
9. 추가 정보 출처	56
9.1 법에 대한 추가 정보	56
9.2 정부 문서 수령기관	58
3.1 발화거리 정보	59
9.4 캐나다 미터법 관행 가이드	59
9.5 캐나다 국경 관리국	59

9.6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	60
9.7 캐나다 화장품 협회	60
프랑스어 요건	60
9.9 국제화장품원료집	61

서문

본 가이드는 화장품 라벨 제작 시 캐나다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로, 다음의 내용을 다룬다.

- 화장품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는 법 및 규정 설명
- 용어의 정의
- 라벨링 규칙의 해석. 이는 수년에 걸쳐 정립된 법적 선례 및 조언적 의견에 기반한 것임.
- 추가 정보 출처

그 외 다른 종류의 요건은 본 가이드에서는 간략하게만 다룬다. 화장품에 허용되는 클레임(효능·효과 주장)의 예시는 [비처방 및 화장품 산업을 위한 비치료적 표시·광고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벨상의 정보는 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라벨상의 일부 정보는 필수 정보이다. 어떤 정보가 필수인지는 본 가이드에서 설명한다. 라벨링에 관한 모든 필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본 가이드 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타 법 및 규정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

1. 서론

화장품의 라벨링은 두 개의 법과 각 법의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 식품·의약품법과 화장품 규정
-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과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 규정

제조자와 수입자는 모든 필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위의 법과 규정을 검토하고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제조자 및 수입자는 화장품 규정 제 30 절에 따라 캐나다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신고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신고 양식(CNF)을 제출했다고 해서 캐나다 보건부가 판매를 승인했다거나, 해당 제품이 화장품으로서 분류되었다거나, 제품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조자와 수입자는 자신이 판매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법 및 그 법의 화장품 규정, 소비자 포장 및 표시·기재법의 모든 필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퀘벡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프랑스어 라벨링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섹션 9.8 "프랑스어 필수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식품·의약품법과 화장품 규정

식품·의약품법과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라벨상의 제품 정체성 표현

- 라벨상에 표시하는 제조자(용어 정의 참고)의 상호 및 주된 사업장 주소
- 라벨상의 성분 목록
-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

식품·의약품법 및 화장품 규정에서는 구성, 안전성, 광고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식품·의약품법의 화장품 규정에 따라 지정된 캐나다 보건부의 조사관은 다음을 조사할 수 있다.

- 화장품
- 화장품의 제조 또는 보관 장소
- 화장품과 관련된 라벨링 또는 광고 자료

또한 화장품 규정에서는 2001년 9월 30일 기준 화장품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에 따라 기밀 용기에 사용해야 하는 기호 및 경고 문구를 정하고 있다.

1.2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과 그 규정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및 그 규정은 사전 포장된 화장품의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정보를 규정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제품 식별 표시 - 영어 및 프랑스어로 기재
- 미터법에 따른 제품의 순 용량·중량 - 영어 및 프랑스어로 기재

- 판매자(용어 정의 참고) 상호 및 주된 사업장 - 영어 및 프랑스어로 기재

본 법 및 규정에서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용기 크기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및 그 규정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만 적용된다. 피부관리사, 미용사 등이 고객에게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들이 고객에게 사전 포장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과 그 규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경쟁총국(Competition Bureau Canada)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연락처 정보는 본 가이드의 “추가 정보 출처”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1.3. 광고의 승인

1992 년 캐나다 보건부가 광고를 승인하는 권한을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Ad Standards)에 이양한 이래로 광고 승인 업무는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가 담당해 왔다.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는 화장품의 TV 광고 카피가 ‘비처방 및 화장품 업계를 위한 비치료적 광고 및 표시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비처방 및 화장품 산업을 위한 비치료적 광고 및 표시 지침’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비치료적 또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클레임을 캐나다 보건부의 허가를 요구하는 치료 또는 건강 관련 클레임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는 이 지침을 통해 화장품 TV 광고 카피에 대해 사전 승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면 광고에 관해 불만이 접수되면 경쟁법이 부여하는 권한 하에 캐나다 경쟁총국이 이를 조사한다.

1.4 라벨상에 기재하는 정보

본 가이드는 화장품 라벨에 기재되는 정보에 관해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룬다.

- 화장품의 분류([섹션 3](#))
- 라벨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These include:
 - a. 제품의 정체성([섹션 4](#))
 - b. 순용량·중량([섹션 5](#))
 - c. 제조자(용어 정의 참고)의 상호 및 주소([섹션 6](#))
 - d. 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섹션 7](#))
 - e. 성분([섹션 8](#))
- 라벨링 필수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 출처([섹션 9](#))

2. 용어의 정의

다음은 주요 용어의 정의이다.

AREA OF DISPLAY PANEL(표시면의 면적) - 2001 년 9 월 30 일 기준 소비자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 2 절 - 표시면을 포함하는 용기의 면 또는 표면의 면적. 용기의 상단, 하단, 테두리, 어깨, 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1. 직사각형 용기의 경우, 표시면을 포함하는 면의 높이와 넓이를 곱한다.

2. 원통형 용기의 경우, 용기의 원주와 높이를 곱한 것의 40 퍼센트를 구한다.

참고:

○ 원주 = $3.14 \times$ 용기의 지름

○ 원주 = $6.28 \times$ 용기의 반지름

3. 접하지 않은 봉투의 경우, 가장 큰 면의 면적을 구한다.

4. 기타 모든 용기의 경우, 용기의 전체 면적의 40 퍼센트를 구한다. 또는 용기에 명백한 표시면이 있는 경우 표시면의 전체 표면 면적을 구한다.

AVOIDABLE HAZARD(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 - 화장품 규정 제 24(2)절 - 화장품 사용자의 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부상의 위험

a. 화장품의 구성 및 성분의 독성학, 도포 부위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

b.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

c. 화장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제거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

CANADIAN UNIT(캐나다 단위) -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 제 2(1)관 - 용량·중량 및 측정법 제 II 부칙에 명시된 측정 단위.
예) 미터법 단위

CONTAINER(용기) -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제 2 절 -
제품의 판매 시 제품을 수용하고 있는 그릇, 포장, 포장지 또는
묶는 끈. 포장 라이너, 배송 용기 등 소비자에게 통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타 모든 포장지 또는 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COSMETIC(화장품) - 식품·의약품법 제 2 절 - 얼굴의 피부, 피부,
모발 또는 치아의 세정, 개선, 변화를 위해 제조, 판매, 또는
그렇게 표시되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DEALER(판매자) -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제 2(d)항 -
제품을 소매 판매, 제조, 가공, 또는 생산하는 자, 또는 제품의
수입, 포장 또는 판매업에 관여하는 자. ('Manufacturer'(제조자)의
정의 참조)

DRUG(의약품) 식품·의약품법 제 2 절 - 다음의 용도를 위해 제조,
판매, 또는 그렇게 표시되는 모든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 a.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 질환, 비정상적 신체 상태 또는 그
증상을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
- b. 인간 또는 동물의 유기적인 기능의 회복, 교정 또는 수정,
혹은 식품이 제조, 조제 또는 보관되는 장소의 소독

IDENTITY(정체성) - 화장품 규정 제 20(b)항 - 화장품의 관용명
또는 일반명(예: 샴푸) 또는 화장품의 기능(예: 바디 스크럽)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화장품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기재할 필요가 없다. (본 예외
사항은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제 10(b)호에 나와 있는
정체성의 정의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INCI NAME(INCI 명) - 화장품 규정 제 21.1 관 - INCI 명은 미국 워싱턴 DC 에서 미국 화장품협회(PCPC)가 발간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어 있는 성분에 부여되는 국제화장품성분명명법(INCI) 명칭을 뜻한다. 국제화장품원료집은 지속적으로 개정된다.

INCI 는 라벨에 성분을 기재할 때 허용되는 용어 체계이다. INCI 명은 여러 언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라틴어에 기반하였으므로 프랑스어와 영어로 둘 다 기재할 필요가 없다.

INGREDIENT(성분) - 화장품 규정 제 2(1)관 - 성분이란 화장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뜻하며 색소, 식물성 성분, 향 및 향료를 포함한다. 그러나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되었으나 화학적 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게 된 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INNER LABEL(내부 라벨) - 화장품 규정 제 2(1)관 - 화장품의 직접적인 용기에 인쇄되거나 부착되는 라벨

LABEL(라벨) - 식품·의약품법 제 2 절 - 식품, 의약품, 화장품, 기기 또는 포장에 부착되었거나, 포함되었거나, 속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기호, 단어, 또는 표시를 뜻한다. 또한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제 2(f)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시, 기호, 도안, 각인, 상표, 티켓 또는 태그를 뜻한다.

MANUFACTURER(제조사) - 화장품 규정 제 2(1)관 - 자체 상호, 또는 자체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상표, 디자인, 상표명, 기타 이름 또는 표시 하에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및

판매하는 개인, 협력체 또는 비법인단체. (Dealer(판매자)의 정의 참조.)

METRIC UNIT(미터법 단위) -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 제 2(1)관 - 용량·중량 및 측정법 부칙 1에 명시된 측정 단위.

NAME AND ADDRESS(상호 및 주소) - 제조자 또는 유통자의 상호 및 주된 사업장의 위치.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제 10(b)(i)호 - 사전 포장 제품을 제조했거나 재판매를 위해 생산한 자(회사 포함)의 이름, 또는 그렇게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포함)의 이름 위 두 경우 모두, 주된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이 가능하도록 완전한 주소를 작성한다.

NATURAL HEALTH PRODUCT(자연건강제품) - 식품·의약품법 하에서 자연건강제품은 '의약품'의 하위 범주로 간주된다.

자연건강제품 규정(NHPR)의 부칙 1(허용되는 자연건강제품 물질)에 명시된 물질이나, 혹은 물질들의 조합으로서 그 중 모든 약용 성분이 부칙 1에 명시된 성분인 것, 또는 다음의 용도를 위해 제조, 판매, 또는 표시되는 동종 요법 약품 또는 전통 약품이 이에 해당한다.

- (a) 인간의 질병, 질환, 비정상적 신체 상태 또는 그 증상을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하는 것
- (b) 인체 장기의 기능을 회복 또는 교정하는 것
- (c) 인체 내 유기적인 기능을 조정하는 것. 예를 들면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기능을 조정하는 것.

그러나 자연건강제품규정(NHPR)의 부칙 2(사용 불가 자연건강제품 물질)에 명시된 물질이나, 부칙 2에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물질의 조합, 부칙 2에 명시된 동종요법 약품이나 전통 약품, 또는 부칙 2에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동종요법 약품이나 전통 약품은 자연건강제품에 속하지 않는다.

NET QUANTITY(순 용량·중량) - 소비자 포장 및 표시·기재법 제 4(1)관 - 포장 내에 수용된 제품의 양이 표현되는 방식.

ORNAMENTAL CONTAINER(장식형 용기) - 화장품 규정 제 2(1)관 - 바닥면을 제외하고, 상표 또는 관용명 이외에 그 어떤 홍보용 또는 광고용 내용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용기로서, 용기 표면에 있는 디자인이나 용기의 모양 또는 질감으로 인해 장식품처럼 보이며, 화장품의 용기로서 뿐만이 아니라 장식품으로서도 판매되는 것. 예: 장식품처럼 보이도록 예술적으로 설계되었으며 별도의 상자가 없는 향수병.

OUTER LABEL(외부 라벨) - 화장품 규정 제 2(1)관 -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인쇄되거나 부착되는 라벨.

외부 라벨은 상자 라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화장품 병을 수용하는 상자에 있는 라벨이라는 의미)

PRE-PACKAGED PRODUCT(사전 포장 제품) -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법 제 2(1)항 - 용기에 포장된 채로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소비자가 사용 또는 구매하는 모든 제품.

PRINCIPAL DISPLAY PANEL(주요 표시 패널) -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 제 2(2)관 라벨의 부분 중,

- a. 디스플레이 카드지에 부착되어 있는 용기의 경우, 용기의 주요표시면의 전체 혹은 일부에 적용되거나, 정상적 또는 통상적인 판매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카드지 면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거나, 또는 용기와 디스플레이 카드지 양 쪽 모두의 그러한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
- b. 장식형 용기의 경우, 용기 바닥면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거나, 주요표시면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거나, 또는 용기에 부착된 태그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부분.
- c. 기타 모든 용기의 경우, 주요표시면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부분.

2001 년 9 월 30 일 기준 소비자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 제 2 절
-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진열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용기의 부분.

PRINCIPAL DISPLAY SURFACE(주요 표시면) -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 제 2(1)관 - 여섯 가지 경우가 있다.

- a. 통상적인 판매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쪽 또는 면을 가진 용기의 경우, 주요 표시면은 윗면을 제외하고 그러한 쪽 또는 면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 b. 용기 중 정상적이거나 통상적인 판매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드러나거나 보이는 부분이 뚜껑인 경우, 주요 표시면은 뚜껑의 상단면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 c. 통상적인 판매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특별히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쪽이나 면이 없는 용기의 경우, 주요 표시면은 윗면 및 바닥면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판매 또는 사용 환경에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일 수 있는 용기의 전체 면적의 임의의 40 퍼센트를 말한다.
- d. 모든 면의 치수가 동일한 가방의 경우 주요 표시면은 면 한 개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 e. 각 면의 치수가 서로 다른 가방의 경우 주요 표시면은 가장 큰 면 중 하나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 f. 용기가 수용하는 제품의 크기에 비해 너무 얇은 포장지이거나 묶는 끈이어서 통상적인 판매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쪽이나 면이 없는 경우, 주요 표시면은 용기에 부착된 티켓 또는 태그의 한 면의 총 면적을 말한다.

SECURITY PACKAGING(안전 포장) - 화장품 규정 제 2(1)관 - 안전상의 기능을 가진 포장으로서 포장이 구매 전 개봉된 적이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소비자에게 주는 것.

3. 화장품의 분류 및 효능·효과 주장(클레임)

제품의 분류는 제품의 전반적인 표시 및 구성에 기반한다. 본 섹션에서는 현재 제품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3.1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의 분류는 두 가지의 요소에 기반한다.

- 제품의 구성
- 제품의 표시

본 서브섹션에서는 제품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도 소개한다.

3.1.1 구성

제품의 구성이 반드시 제품의 분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성분이나 성분의 함량으로 인해 해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1.2 표시

제품의 분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제품의 효능 및 효과 주장(클레임)으로, 법에서는 “판매를 위한 표시”로 정의하고 있다. 클레임은 제품 라벨, 포장 내 삽입 광고 또는 일반 광고, 회사 웹사이트상의 단어, 문장, 그림, 기호, 문단 또는 암시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클레임이 함께 해당 제품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3.1.3 분류의 예시

본 섹션에서는 제품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시를 다룬다. 특정 품목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는 화장품 프로그램(Cosmetics Program)에 문의하기 바란다.

- 라벨에 'SPF, 'sunscreen', 'sunblock'이라는 용어가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서 규제된다. 반면 동일한 제품이 보습용으로선 화장품으로 사용되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함유하는데 라벨에 위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제품은 화장품으로 간주된다.
- 불소를 함유한 치약은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기 때문에 의약품이다. 반면 불소를 함유하지 않은 치약은 주 목적이 구취 개선 및 치아 미백이므로 화장품이다.
- 비듬방지 샴푸는 비듬 생성이라는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를 교정하므로 의약품이지만, 그 외 일반적인 샴푸는 화장품이다.
- 어떤 제품의 유일한 용도가 화장품인데 화장품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삼켜야만 하는 경우 이 제품은 의약품으로서 규제된다. (예: 구취 개선을 위해 클로로필을 함유하는 제품)
- 어떠한 화장품을 삼키는 행위가 그 제품의 화장품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위라면, 그 제품은 식품으로 간주되며 화장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 박하사탕이나 목캔디를 입에 머금고 있으면 구취가 개선된다. 그러나 사탕이 녹으면서 구성 성분을 삼키게 된다).
- 어떠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삼키는 행위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화장품이다. (예: 입을 상쾌하게 하기 위한 치약, 스프레이, 또는 물약)

어떤 제품은 두 가지 분류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소 미함유 치약을 함유하는 일회용 칫솔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식품·의약품법 및 화장품 규정에 의거하여 '화장품'으로 분류
- 의료기기 규정에 의거하여 '의료기기'로 분류

치약은 화장품이고(라벨에 불소 함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의약품), 칫솔은 의료기기이다.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다음에 의해 규제된다.

- 식품·의약품법 및 화장품 규정(치약)
- 소비자 포장 및 표시·기재법 및 규정(치약)
- 의료기기 규정(칫솔)

중요한 점은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약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려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2 허용되는 클레임과 허용되지 않는 클레임

클레임은 단어, 문장, 문단 또는 단순한 암시의 형태일 수 있다. 화장품에 허용되는 클레임과 허용되지 않는 클레임의 예시는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가 발간하는 '비치료적 광고 및 표시·광고에 관한 비처방 및 화장품 업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제품의 정체성

건강, 안전, 제품 비교, 사기 방지 등의 목적으로 화장품의 정체성은 구매 시 사용자에게 명백해야 하며 모든 외부 포장지를 제거한 뒤에도 계속해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라벨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쉽게 읽혀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의 두 상황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가령 상자 안에 수용된 병은 라벨이 두 개이다. 상자에 외부 라벨이 있고 병에 내부 라벨이 있다.
-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가령 상자에 수용되지 않은 샴푸병은 병 위에 내부 라벨만 있다.

4.1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의 경우 각 라벨 종류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이 적용된다.

4.1.1 외부 라벨 요건

외부 라벨의 경우 주요 표시 패널에 제품 정체성 문구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문구는 라벨의 배경, 그리고 라벨상의 기타 모든 정보와 확실히 대비되어야 한다.

공식 이중언어 표시 면제

공식 이중언어 표시·기재에 관련한 면제는 특정 경우에 부여된다.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 제 6(3)절 및 6(7)절에서는 실제로 시험 마케팅을 거치는 중인 제품, 그리고 지역 특산품에 최대

1 년간 임시 면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정체성은 두 공식 언어 중 한 가지로만 표시할 수 있다.

면제에 관한 추가 정보는 캐나다 경쟁총국에 요청할 수 있다.([섹션 9.1](#) "법에 관한 추가 정보 문의처")

단일 언어로 표시하는 용어

일부 용어는 공식적으로 이중언어로 간주된다. 예: "parfum", "eau de toilette", "cologne"

추가 패널

일부 사전 포장 제품의 라벨은 주요 표시 패널과 크기가 동일하고 주요 표시 패널만큼 잘 보이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추가 패널로 이루어져 있다. 제품의 정체성은 다른 패널 중 하나에 다른 언어로도 표시되었다는 조건 하에 주요 표시 패널에 두 공식 언어 중 한 개만 표시할 수 있다.

글꼴

사용 가능한 글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가독성은 필수이다.

가독성 및 글자 높이

순용량·중량을 제외하고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모든 정보([섹션 5.1.1, "외부 라벨 요건"의 "글자 높이" 부분 참고](#))는 통상적인 판매 또는 사용 조건 하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고 글자 높이는 1.6 mm 이상이어야 한다. 주요 표시면의 면적이 1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글자 높이는 0.8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글자의 최소 높이는 대문자만 쓰였을 경우 대문자 글자의 높이에 상응한다. 소문자만 쓰였거나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쓰인 경우 최소 높이는 소문자 'o'에 상응한다.

추가 정보는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의 제 14, 15, 16 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수

일부 제품은 제품 정체성 표기가 면제될 수 있다. 예: 어떤 제품이 보통 한 개 단위로 판매되고,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있고 내용물이 무엇인지 식별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장되는 경우(예: 아이새도우 색상 3 개가 담긴 플라스틱 버블팩), 또는 포장 내 내용물을 정확히 나타내는 그림이 라벨에 있는 경우.

4.1.2 내부 라벨 필수 요건

제품 정체성의 명확한 표시

립스틱처럼 제품의 정체성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에는 내부 라벨에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품의 정체성을 기재해야 한다. 이 정체성 문구는 라벨의 배경 및 라벨상에 있는 모든 다른 정보와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공식 언어

내부 라벨에 필수로 두 공식 언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제조자와 수입자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화장품의 정체성을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4.2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4.2.1 내부 라벨 필수 요건

정체성 문구는 주요 표시 패널에 영어 및 프랑스어로 기재해야 한다. 문구는 배경 및 라벨상의 다른 모든 정보와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단일 언어로 표시하는 용어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의 외부 라벨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섹션 4.1.1, "외부 라벨 필수 요건"의 "단일 표현" 참고](#))

추가 패널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의 외부 라벨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섹션 4.1.1, "외부 라벨 필수 요건"의 "추가 패널" 참고](#))

글꼴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의 외부 라벨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섹션 4.1.1, "외부 라벨 필수 요건"의 "글꼴" 참고](#))

가독성과 글자의 높이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의 외부 라벨 요건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섹션 4.1.1, "외부 라벨 필수 요건"의 "가독성 및 글자 높이" 참고](#))

제품 정체성의 명확한 표시

립스틱, 아이브로우 펜슬, 오토 마스크라 어플리케이터, 파우더와 퍼프를 포함하는 콤팩트와 같이 제품의 정체성이 확실하여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제품도 있다. 만약 제품이 불투명한 용기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의 정체성을 기재해야 한다.

5. 제품의 순용량·중량

화장품 규정에서는 제품의 순용량·중량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 포장 및 표시·기재법에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몇 가지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은 내부에 담긴 내용물의 품질 또는 양에 대해 소비자를 호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거나 보여야 한다.

라벨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가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의 두 상황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가령 상자 안에 수용된 병은 라벨이 두 개이다. 상자에 외부 라벨이 있고 병에 내부 라벨이 있다.
-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가령 상자에 수용되지 않은 샴푸병은 병 위에 내부 라벨만 있다.

5.1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의 경우 각 라벨 종류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이 적용된다.

5.1.1 외부 라벨 요건

외부 라벨에는 주요 표시 패널에 순용량·중량을 영어 및 프랑스어로 기재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라벨상에 있는 다른 모든 내용과 명확히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측정 단위

측정 단위로 사용되는 적절한 미터법 기호는 이중언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기호가 아니라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번역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은 [표 5-1](#)에 나와 있다.

표 5-1 • 측정 단위

영어	프랑스어	올바른 이중언어 약자	흔히 쓰이는 틀린 약자
gram	gramme	g	G, gs, g., gm
kilogram	kilogramme	kg	Kg, KG, Kgs, kg., kgm
litre	litre	L, l, l*	L., Ls, l., ls
millilitre	millilitre	mL, ml, ml*	ML, MLS

* 리터를 'l', 밀리리터를 'ml'로 정자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으나 'L' 및 'mL'이라는 약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추가 패널

일부 사전 포장 제품의 라벨은 주요 표시 패널과 크기가 동일하고 주요 표시 패널만큼 잘 보이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추가 패널로 이루어져 있다. 추가 패널 중 한 곳에 순용량·중량을 한 언어로 기재하였다면 주요 표시 패널에는 나머지 하나의 언어로만 기재해도 상관 없다.

글꼴

순용량·중량 표기의 숫자 부분은 굵은 글꼴로 기재해야 한다. 순용량·중량 표시에 포함되는 기타 모든 정보에는 글꼴의 제한이 없다. (예: 측정 단위, 기호, 약자 등) 그러나 가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표 5-2 주요 표시면 면적에 따른 글자 높이

주요 표시면 면적	최소 글자 높이
32 cm ² (5 in ²) 이하	1.6 mm(1/16 in.)
32 cm ² (5 in ²) 초과, 258cm ² (40 in ²) 이하	3.2 mm(1/8 in.)
258 cm ² (40 in ²) 초과, 645 cm ² (100 in ²) 이하	6.4 mm(1/4 in.)
645 cm ² (100 in ²) 초과, 25.8 dm ² (400in ²) 이하	9.5 mm(3/8 in.)
25.8 dm ² (400 in ²) 초과	12.7 mm(1/2 in.)

아래 설명하는 구체적인 상황에는 특정 순용량·중량 요건이 적용된다.

- a. 제품이 수로 표시되며 그 수가 2 미만인 경우
순용량·중량은 이미 제품 정체성 문구를 통해 표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순용량·중량 표시에 적용되는 글꼴 높이를 사용하여 제품 정체성을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섹션 4.1.1 "개수" 및 본 섹션 위의 "글자 높이" 부분 참고)
- b. 일회용 또는 일회 도포용 키트의 순용량·중량을 표시할 때는 제품 정체성을 표시하고(섹션 4.1.1 "공식 이중언어 표시 면제", "단일 언어로 표시하는 용어" 및 "추가 패널" 부분 참고), 내용물이 일회 사용 또는 일회 도포에 충분하다는 내용을 영어 및 불어로 기재한다. 가정용 퍼머넌트 및 염모용 샴푸가 이 분류에 속한다.
- c. 다회용 또는 다회 도포용 키트의 순용량·중량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본 키트는 인공 손톱 10 개, 접착제 5mL, 클리너 7mL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메이크업 키트는 화이트 베이스 크림 50mL, 루즈 파우더 10g, 그리고 각각 5mL 용량의 크림(레드, 그린, 블랙, 옐로우) 4 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제모제는 양 쪽 다리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내용물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 포장 제품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 제 22, 23 및 36 절에 따라 사전 포장 제품의 순용량·중량은 다음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 제품이 액체, 기체 또는 점성 물질일 경우, 용량으로 표기
- 제품이 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표기

보충적인 비(非)미터법 표기

순용량·중량의 비미터법 표기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주로 표시된 사항을 보충하는 정보로 간주된다. 이러한 비미터법 표기는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호도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갤런은 캐나다 갤런보다 약간 적기 때문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라벨에는 미국 갤런임을 표시해야 한다. (예: 3.79L (1 gallon U.S.))

미국 액체온스는 캐나다 액체온스보다 약간 크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밀리리터와 미국 액체온스를 사용하는 경우 미국 단위를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예: 591 mL, 20 fl. oz. U.S.)

숫자와 단위의 분리

숫자와 단위는 그 사이에 공백 한 칸을 두어 분리한다. 예:

- "500 mL"은 옳은 표기이며
- "500 mL"은 틀린 표기이다.

"Net(순)"이라는 단어의 사용

순용량·중량을 표시할 때 "net(순)", "net weight(순중량)", "net contents(순내용물)", 또는 "net quantity(순용량·중량)"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표시된 용량·중량의 정확성

용량·중량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수점 뒤의 0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예외규정이 있다.

- a. 용량·중량이 100 그램 또는 100 밀리리터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자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소수점 뒤에 오는 0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
 - 85 g는 옳은 표기이다.
 - 85.2 g는 허용되는 표기이다.
 - 85.15 g는 틀린 표기이다.
- b. 용량·중량이 1 미만인 경우,
 - 소수점 앞에 0을 한 개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기하거나,
 - 단어로 표기한다.
- c. (b)를 변형하여 500 그램과 500 밀리리터는 각각 "one-half kilogram(반킬로그램)" 또는 "one-half litre(반리터)"로 표시 가능하다. 이는 숫자 또는 단어로 표시 가능하다.

500 그램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500 g
- 0.5 kg
- one-half kilogram (un demi-kilogramme)
- one-half kg (un demi kg)

500 밀리리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500 mL
- 0.5 L
- one-half litre (un demi-litre)
- one-half L (un demi L)

미터법 표기 사항을 위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수점 첫 번째 또는 1의 자리까지 올림 또는 내림해야 하는 경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a. 버려야 하는 자리의 숫자가 5 미만이라면 유지된 마지막 자리수는 바꾸지 않는다. 예를 들어 984.3을 1의 자리까지 올림 또는 내림해야 하는 경우, 소수점 뒤의 숫자를 버려서 984가 된다.

100 미만의 숫자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68.4를 반올림(소수점 뒤의 숫자 버리기)하여 두 자리 수로 만들면 68이 된다.

- b. 버려야 하는 숫자가 정확히 5이고 뒤에는 0밖에 없다면, 유지된 마지막 자리 숫자가 홀수일 경우 올림하고 짝수일 경우 내림한다. 예:

- 984.50은 984가 된다.
- 985.50은 986가 된다.
- 68.50은 68가 된다.
- 7.450은 7.4가 된다.
- 7.550은 7.6가 된다.

- c. 버려야 하는 자릿수가 5 를 초과하거나, 5 이면서 뒤에 0 이 아닌 수가 최소 한 개 붙어있는 경우, 유지하는 마지막 자릿수는 1 만큼 올린다. 예:
- 984.7 은 985 가 된다.
 - 984.51 은 985 가 된다.

평균 용량·중량

포장 내 수용되어 있는 제품의 실제 양은 허용되는 오차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 제 1 부칙의 오차범위표 참고)

에어로졸 제품

모든 에어로졸 제품은 소비재 포장 및 표시·기재 규정의 제 22.1 절을 준수해야 한다. 에어로졸 제품의 순용량·중량은 추진제와 성분을 더한 중량으로 표시해야 한다.

5.1.2 내부 라벨 필수 요건

순용량·중량 표시는 내부 라벨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제조자가 그러한 표시를 내부 라벨에 하기로 하는 경우 거짓 정보를 담거나 소비자를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5.2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은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의 외부 라벨에 요구되는 표시·기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섹션 5.1.1, "외부 라벨 요건" 참고](#))

순용량·중량 표시는 주요 표시 패널에 영어 및 프랑스어로 해야 한다. 기재 사항은 라벨상에 있는 다른 모든 내용과 시각적으로 명확히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순용량·중량을 파악할 수 있다.

6. 제조사의 상호 및 주소

일반 국민이나 각종 협회, 의료행위자, 정부기관, 또는 기타 이익 단체가 제품 책임자의 신분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 책임자와 소통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책임자는 대개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다.

화장품 프로그램에 제출하는 제품의 화장품 신고 양식의 섹션 3에 작성하는 라벨상 이름 및 주소가 실제 라벨상 이름 및 주소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의 두 상황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가령 상자 안에 수용된 병은 라벨이 두 개이다. 상자에 외부 라벨이 있고 병에 내부 라벨이 있다.
-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가령 상자에 수용되지 않은 샴푸병은 병 위에 내부 라벨만 있다.

6.1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6.1.1 외부 라벨 요건

외부 라벨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읽기 쉬운 방식으로 포장의 외부면에 표시해야 한다. (바닥면을 제외한 어느 곳이나 표시가 가능하나 아래 “수입 제품” 부분에서 논하는 요건을 준수해야 함)

공식 언어

상호 및 주소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또는 두 언어로 모두 작성할 수 있다.

글꼴

글꼴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가독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글자 높이

대문자만 사용하는 경우 글자의 높이는 최소 1.6 mm 이어야 한다. 대문자 및 소문자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글자 스타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문자 “o”의 높이는 최소 1.6 mm 이어야 한다.

수입 제품

사전 포장 제품이 캐나다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정보를 다음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캐나다 밖에 있는 제조사의 이름 및 주된 사업장을 기재한다.
- 캐나다 내 판매자의 이름 및 주된 사업장을 기재하며 그 앞에 “imported by”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importé pour”)를 기재한다.

- 캐나다 내 판매자의 이름 및 주된 사업장 바로 옆에 제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

캐나다 내에서 포장된 벌크 제품

제품이 캐나다 외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고, 벌크 형태로 캐나다로 수입되며, 캐나다 내에서 (소매 이외의 수준에서) 포장된 후 라벨링이 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라벨링되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캐나다 경쟁총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섹션 9.1, "법과 관련된 추가 정보" 부분 참고](#))

포장에 관한 책임

포장이 제조되었거나 라벨이 인쇄된 지역(제품이 만들어진 지역이 아님)이 라벨상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경우, 해당 제조지는 포장 또는 라벨에만 해당한다는 언급을 추가로 해야 한다.

6.1.2 내부 라벨 필수 요건

내부 라벨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상호 및 주소는 용기의 바닥면을 제외하고 어느 곳이나 표시할 수 있다. (장식용 용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공식 언어 및 글꼴

위의 [섹션 6.1.1 "외부 라벨 요건"](#)의 ["공식 언어"](#) 및 ["글자체"](#)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6.2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제품의 포장에 라벨이 한 개만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를 다음의 서브섹션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6.2.1 가독성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상호 및 주소는 읽기 쉽도록 기재해야 한다. 이 정보는 용기의 바닥면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6.2.2 기타 필수 요건

상호 및 주소에 관한 기타 모든 요건은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에서 외부 라벨에 해당되는 요건과 동일하다. 위의 [섹션 6.1.1, "외부 라벨 요건"](#)을 참고하기 바란다.

7. 예방 가능한 위험 및 주의사항

식품·의약품법 제 16 절, 그리고 화장품 규정 제 24 절에 따르면 사용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방 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용방법 및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주의 문구가 있다는 조건 하에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용방법, 주의사항 및 기호를 영어 및 불어로 작성하면 된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요건은 다음의 두 상황에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예: 에어로졸 캔이 상자 안에 포장된 경우 라벨이 두 개이다. 상자에는 외부 라벨이, 캔에는 내부 라벨이 있다.)
-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예: 상자 안에 포장되지 않은 에어로졸 캔은 병 위에 내부 라벨만 있다.)

위와 같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 및 첨부문서의 사본을 화장품 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규정 제 30(1)(b)관 참고)

7.1 염모제 및 기밀 용기에 수용된 생식기용 데오드란트에 대하여 규정된 주의사항

일부 제품의 경우 위험 요소 제거의 방식이 화장품 규정에 의해 규정된다.

7.1.1 염모제

p-페닐렌디아민 또는 기타 콜타르계 염모제 베이스 또는 콜타르계 염모제 중간체를 함유한 염모제 제품은 화장품 규정 제 22 절에 따라 외부 및 내부 라벨에 다음의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CAUTION: This product contains ingredients that may cause skin irritation on certain individuals and a preliminary test according to accompanying directions should first be made. This product must not be used for dyeing the eyelashes or eyebrows. To do so may cause blindness."
- Ce produit contient des ingrédients qui peuvent causer de l'irritation cutanée chez certaines personnes; il faut donc d'abord effectuer une épreuve préliminaire selon les directives

ci-jointes. Ce produit ne doit pas servir à teindre les sourcils ni les cils; en ce faisant, on pourrait provoquer la cécité."

("주의: 본 제품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제품에 동봉된 사용방법에 따라 사전 테스트를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본 제품은 속눈썹이나 눈썹 염색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속눈썹이나 눈썹에 사용하는 경우 시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테스트

위와 같은 염모제 제품의 모든 포장에는 제품이 피부의 심각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특별한 민감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시사항은 두 공식 언어를 모두 사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아래와 유사한 지시사항을 사용하여 사전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영어 및 프랑스어로 안내해야 한다.

1.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여 귀 뒤 또는 팔뚝 안쪽 피부의 작은 면적을 닦는다.
2. 해당 부위에 사용이 준비된 염모제를 소량 바르고 마르도록 둔다.
3. 24 시간 후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해당 부위를 씻는다.
4. 자극 또는 염증이 명백히 보이지 않으면 해당 염모제에 대한 과민증이 없다고 간주해도 된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 매번 수행해야 한다.

5. 눈의 염증 또는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본
염모제를 눈썹 또는 속눈썹을 염색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7.1.2 기밀 용기에 수용된 생식기용 데오드란트

생식기 부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기밀 용기의 형태로
판매되는 데오드란트는 화장품 규정 제 23 절에 따라 외부 및
내부 라벨에 다음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Directions: For external use only. Use sparingly and not more than once daily. Spray external skin surface while holding nozzle at least 8 inches from the skin."
- "Mode d'emploi: Pour usage externe seulement. Employer modérément pas plus d'une fois par jour. Vaporiser sur la surface externe de la peau en tenant le bec à une distance d'au moins 8 pouces."
- "사용법: 주의—외용으로만 사용할 것. 소량씩만 사용하고 하루에 두 번 이상 사용하지 말 것. 노즐을 피부로부터 최소 8 인치 떨어뜨린 채로 바깥 피부에 뿌릴 것."
- "Caution: Do not apply internally or to broken, irritated or itching skin. Do not use when wearing a sanitary napkin. Discontinue use immediately if a rash or irritation develops. Consult a physician if the rash or irritation persists or if there is any unusual odour or discharge at any time."
- "Mise en garde: Ne pas appliquer sur une surface interne ou sur une surface éraflée, irritée ou en proie à la démangeaison. Ne pas utiliser avec des serviettes hygiéniques. Cesser immédiatement l'emploi en cas d'éruption ou d'irritation. Consulter un médecin si l'éruption ou l'irritation persiste ou en cas d'odeur ou de sécrétion inhabituelle."
- "주의: 갈라졌거나 자극되었거나 가려운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 것. 생리대 착용 중에는 사용하지 말 것. 발진 또는

자극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발진 또는 자극이 계속되거나 언제라도 비정상적인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할 것.

7.2 기밀 금속 용기에 대하여 규정된 주의사항

기밀 금속 용기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 용기는 금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 용기의 내용물은 압축되어 있으며
- 용기 내 수동으로 조작되는 밸브를 통해 내용물을 배출시킨다.

7.2.1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기밀 금속 용기의 포장에 내부 라벨만 있는 경우 다음의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 a. 그림 7.1의 기호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해야 한다.

그림 7.1: 아래의 “폭발성” 그림을 “주의” 부분에 표시한다.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최소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i. 표시 패널의 4 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한다.
면적 = (0.04) X (표시 패널의 면적)
- ii. 면적이 i) 의 값인 원의 지름을 계산한다.

$$DIAMETER = \sqrt{(1.27) \times (area\ of\ circle)}$$

구한 지름이 6.44 mm 미만인 경우, 다음 단계에서 6.4 mm 를 지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구한 지름이 6.4 mm 미만이며 표시된 순용량·중량이 30 ml 또는 30 g 미만인 경우, 6.0 mm 을 지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iii. (ii)에서 구한 지름을 가진 원을 그린다.
- iv. 기호를 그 원 안에 그린다. 기호의 모든 꼭지점(이 경우 3 개)이 원에 맞닿아야 한다. (참고로 위의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원의 지름의 0.83 배이다.)

b. "CAUTION" 및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신호어는 기호 바로 밑에 표시해야 하며 굵은 글꼴, 산세리프체, 대문자로 인쇄해야 한다. 신호어에 사용하는 글자의 높이는 기호의 크기를 위해 계산된 지름의 4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a) 항목 참고) 신호어는 서로 나란히 표시할 필요는 없다.

c. "CONTAINER MAY EXPLODE IF HEATED" 및 "CE CONTENANT PEUT EXPLOSER S'IL EST CHAUFFÉ"(용기를 가열하면 폭발할 수 있음)라는 메시지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해야 한다.

이 문구는 주요 위험 요소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구로서, 신호어((위의 (b) 항목 참고) 바로 밑에 굵은 또는 중간 굵은 글씨체, 산세리프체, 대문자로 표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기재할 시 글자의 높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표시 패널의 면적이 100 cm^2 이하인 경우, 최소 1.5mm
- 표시 패널의 면적이 100 cm^2 을 초과하고 330 cm^2 이하인 경우, 최소 3.0 mm
- 표시 패널의 면적이 330 cm^2 을 초과하고 650 cm^2 이하인 경우, 최소 6.0 mm
- 표시 패널의 면적이 650 cm^2 을 초과하고 2600 cm^2 이하인 경우, 최소 9.0 mm
- 표시 패널의 면적이 2600 cm^2 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12mm

d. 다음의 문구들은 용기의 바닥면을 제외하고 라벨의 패널 중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Contents under pressure. Do not place in hot water or near radiators, stoves or other sources of heat. Do not puncture or incinerate container or store at temperatures over 50°C."

그리고

"Contenu sous pression. Ne pas placer dans l'eau chaude ni près des radiateurs, poêles ou autres sources de chaleur. Ne pas percer le contenant ni le jeter au feu, ni le conserver à des températures dépassant 50°C."

(“본 제품의 내용물은 압착되어 있음. 뜨거운 물에 넣거나, 라디에이터, 난로 혹은 기타 열원 근처에 놓지 마시오. 용기에 구멍을 뚫거나 소각하지 마시오. 온도가 50°C를 초과하는 곳에 보관하지 마시오.”)

이러한 예방 문구는 대문자 단독으로 또는 대소문자를 모두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산세리프 글자체로 인쇄해야 한다. "FIRST AID TREATMENT" 및 "PREMIERS SOINS"(응급 처치법)이라는 문구는 굵은 글씨체 및 대문자로 인쇄해야 한다. 대문자의 높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표시 패널의 면적이 170 cm² 이하인 경우, 최소 1.5 mm
- 표시 패널의 면적이 170 cm² 을 초과하고 330 cm² 이하인 경우, 최소 3.0 mm
- 표시 패널의 면적이 330 cm² 을 초과하고 650 cm² 이하인 경우, 최소 4.5 mm
- 표시 패널의 면적이 650 cm² 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6.0mm

7.2.2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제품에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경우 두 라벨에 모두 표시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표 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1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기밀 금속 용기의 필수 요건

제품의 순용량·중량		섹션 7.2.1 의 각 항목 참고
120 mL 또는 120 g 초과	외부 라벨	(a), (b), (c), (d)
	내부 라벨	(a), (b), (c), (d)
120 ml 또는 120 g 이하, 60 mL 또는 60 g 초과	외부 라벨	(a), (b), (c), (d)
	내부 라벨	(a), (b), (c)*
60 mL 또는 60 g 이하	외부 라벨	(a), (b), (c), (d)
	내부 라벨	(a), (b)*

*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선택 사항이다.

7.3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가연성 제품에 대하여 규정된 주의사항

섹션 7.2 "기밀 금속 용기에 대하여 규정된 주의사항"에서 설명한 요건에 더해,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가연성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기재 요건이 추가로 적용된다.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가연성 제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용기는 금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 용기의 내용물이 압축되어 있다.
- 용기 내 수동으로 조작되는 밸브를 통해 내용물을 배출시킨다,
- 스프레이가 점화될 수 있다.

(화장품 규정 제 26 절 및 공식 방법 DO-30: 발화거리 시험 참고)

7.3.1 내부 라벨만 있는 제품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가연성 제품의 포장에 내부 라벨만 있는 경우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존재한다. 본 섹션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 발화거리가 15cm 미만인 제품
- 발화거리가 15cm 이상, 45cm 미만인 제품
- 발화거리가 45cm 이상이거나 불꽃이 용기 쪽으로 역류하는 제품

발화거리가 15 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발화거리가 15 센티미터 이하인 제품은 내부 라벨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a. 그림 7.2의 기호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

그림 7.2: “가연성” 그림을 “주의” 부분에 표시한다.



기호의 크기는 섹션 7.2.1 (a)항목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 b. “CAUTION” 및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한다. (기밀 금속 용기 요건 또한 적용되므로(섹션 7.2.1, (b)항목 참고) 이러한 신호어는 이미 있어야 정상이다.
- c. “FLAMMABLE” 및 “INFLAMMABLE”이라는 단어를 라벨의 표시면에 표시한다.

글자의 위치, 스타일 및 크기는 섹션 7.2.1 (c)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 d. **“Do not use in presence of open flame or spark”** 및 **“Ne pas utiliser en présence d'une flamme nue ou d'étincelles”**(화염이나 불꽃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는 용기의 바닥면을 제외한 라벨의 패널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기재할 때 글자의 높이는 섹션 7.2.1 (d)항목에 설명된 것을 따른다.

원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섹션 7.2.1, (d)항목의 문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화거리 15 센티미터 이상, 45 센티미터 미만

발화거리가 15 센티미터 이상 45 센티미터 이하인 제품은 내부 라벨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a. 그림 7.3의 기호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한다.

그림 7.3: “인화성” 그림을 “경고” 부분에 표시한다.



기호의 최소 크기는 섹션 7.2.1 (a)항목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기호의 모든 꼭지점(이 경우 3 개)이 원에 맞닿아야 한다.

- b. “WARNING” 및 “AVERTISSEMENT”이라는 단어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한다.

이러한 신호어의 글자 위치, 스타일 및 크기는 섹션 7.2.1 (B)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 “WARNING” 및 “AVERTISSEMENT”가 더 높은 정도의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호 단어 "CAUTION" 및 "ATTENTION"은 생략 가능하다.

- c. "FLAMMABLE" 및 "INFLAMMABLE"이라는 단어를 라벨의 표시면에 표시한다.

글자의 위치, 스타일 및 크기는 섹션 7.2.1 (c)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 d. **"Do not use in presence of open flame or spark"** 및 **"Ne pas utiliser en présence d'une flamme nue ou d'étincelles"**(화염이나 불꽃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는 용기의 바닥면을 제외한 라벨의 패널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기재할 때 글자의 높이는 섹션 7.2.1 (d)항목에 설명된 것을 따른다.

원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섹션 7.2.1, (d)항목의 문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화거리가 45 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불꽃이 용기 쪽으로 역류하는 제품

발화거리가 45 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불꽃이 용기 쪽으로 역류하는 제품은 내부 라벨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a. 그림 7.4의 기호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한다.

그림 7.4: "가연성" 그림을 "경고" 부분에 표시한다.



기호의 크기는 섹션 7.2.1 (a)항목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기호의 모든 꼭지점(이 경우 8 개)이 원에 맞닿아야 한다.

- b. "DANGER"라는 단어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한다.

이러한 신호어의 글자 위치, 스타일 및 크기는 섹션 7.2.1 (B)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이 경우 "DANGER"가 더 높은 정도의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호 단어 "CAUTION" 및 "ATTENTION"은 생략 가능하다.

- c. "EXTREMELY FLAMMABLE" 및 "EXTRÊMEMENT INFLAMMABLE"(극도의 인화성)이라는 단어를 라벨의 표시 패널에 표시한다.

글자의 위치, 스타일 및 크기는 섹션 7.2.1, (c)항목에 설명되어 있다.

- d. **"Do not use in presence of open flame or spark"** 및 **"Ne pas utiliser en présence d'une flamme nue ou d'étincelles"**(화염이나 불꽃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는 용기의 바닥면을 제외한 라벨의 패널 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기재할 때 글자의 높이는 섹션 7.2.1, (d)항목에 설명된 것을 따른다.

원한다면 이러한 문구는 섹션 7.2.1, (d)항목의 문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7.3.2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제품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인화성 제품의 포장에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경우 표시·기재는 본 섹션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

표시·기재할 정보는 용기 내 수용된 내용물의 순용량·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 순용량·중량이 120 mL 또는 120 g 을 초과하는 경우
- 순용량·중량이 120 mL 또는 120 g 이하, 60 ml 또는 60 g 초과하는 경우
- 순용량·중량이 60ml 또는 60g 이하인 경우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이 표 7-2에 정리되어 있다.

표 7-2 외부 및 내부 라벨이 모두 있는 기밀 금속 용기에 수용된 가연성 제품 요건

제품의 순용량·중량		7.3.1의 서브섹션의 항목 참고(불꽃의 역류 여부 또는 발화 종류에 따라)
120 mL 또는 120 g 초과	외부	(a), (b), (c), (d)

	라벨	
	내부 라벨	(a), (b), (c), (d)
120 ml 또는 120 g 이하, 60 mL 또는 60 g 초과	외부 라벨	(a), (b), (c), (d)
	내부 라벨	(a), (b), (c)*
60 mL 또는 60 g 이하	외부 라벨	(a), (b), (c), (d)
	내부 라벨	(a), (b)*
*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선택 사항이다.		

7.4 구강청결제에 대하여 규정된 경고

구강청결제는 안전 포장을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안전 포장 요소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거나, 제품에 직접 닿는 용기의 주요 부분이 아닌 경우, 라벨에 해당 안전 포장 요소를 강조하는 문구 또는 그림을 표시해야 한다.

7.5 규정되지 않은 경고

기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는 화장품 규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방 가능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화장품 사용에 구체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그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제조자 및 수입자의 책임이다. 다음의 예시는 참고용이다.

7.5.1 비금속 용기

기밀 금속 용기의 형태로 판매되는 가연성 또는 비가연성 제품에 대한 요건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으나, 제조자는 용기가 비금속일 경우에도 유사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가 정보는 본 가이드의 [섹션 7.2](#) 및 [7.3](#)에서 찾아볼 수 있다.

7.2.5 첩포 검사

"CAUTION make a patch test" ("ATTENTION effectuer un test épicutané")(경고: 첩포 검사를 실시할 것)과 같은 경고가 라벨에 표시되었다면 이는 해당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첩포 검사 수행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라벨상에 첩포 검사 수행 방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정보를 경고 문구와 함께 언급하거나, 검사법 자체를 경고 문구와 함께 언급할 수도 있다.

7.5.3 가성(苛性) 제모제

가성 제모제에는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포함해야 하며 화학화상의 위험을 언급해야 한다.

7.5.4 녹이는 제모제

사용 전 열을 가해 녹여서 액체화시켜야 하는 제모제는 위험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을 포함해야 하며 화상의 위험을 언급해야 한다.

8. 성분

2006 년 11 월부터 화장품 규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라벨에는 전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8.1 국제화장품성분명명법(INCI) 체계

INCI 는 International Nomenclature for Cosmetic Ingredients(국제 화장품 성분 명명법)의 줄임말이다. 화장품 성분 명칭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다언어적, 다국적이며 라틴어에 기반한다. 미국 화장품협회인 PCPC(구 CTFA)의 국제명명법위원회가 만들었다. INCI 시스템은 국제화장품원료집의 기반이 된다. 국제화장품원료집에는 대부분의 INCI 명 및 각 명칭에 해당하는 실험화학식, 기술·상표명, CAS 번호 또는 대체 번호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성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기타 국가 정부 및 산업계 대표와 함께 국제명명법위원회에 참여하며, 이 위원회는 각 화장품 원료에 부여되는 INCI 명을 정한다.

8.2 성분 명명법

화장품 규정에 따라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라벨에 국제화장품원료집의 가장 최신판에 따른 INCI 라벨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성분표는 화장품의 외부 라벨에 표시해야 하며, 제품에 한 개의 라벨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추가적인 설명 또는 마케팅 용어는 성분표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라벨의 다른 부분에는 표시 가능하다. 식물성 성분이나 장식용 용기와 같은 특정 성분 및 제품의 경우 성분 표시법은 화장품 규정에서 정한다.

8.2.1 식물성 성분

식물성 성분은 식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유래하였으며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되기 전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식물성 성분은 INCI 원료집에 속명, 증명, 관용명, 사용된 식물의 부분 및 추출법을 이용하여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오렌지 껍질 추출물에 대한 INCI 명은 *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extract 이다. 캐나다에서는 식물성 성분을 표시할 때 최소한 INCI 명의 속명 및 증명 부분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예) INCI 명: *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extract

라벨에는 최소한 "*Citrus aurantium dulcis*"까지는 표시해야 한다.

또한 완전한 INCI 명을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나, 현재로서는 필수는 아니다. 화장품 규정 제 21.2(3)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8.2.2 부칙에 나열되어 있는 성분표

화장품 규정 부칙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은 다음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 1 열에 명시된 EU 통속명,

또는 제 2 열 및 3 열에 명시된 적절한 영어 및 프랑스어명(21.2(4)절에 따름) 이 세 용어를 모두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영문명 및 프랑스어명 둘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는 없다.

영문명 및 프랑스어명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품 규정에서는 이 둘을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용어 사이에 슬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식을 선호하기도 한다. 필수 사항은 두 용어가 동등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부칙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영어 및 프랑스어로 모두 작성해야 하는 유일한 성분들이다.

8.2.3 INCI 명이 없는 성분

대다수의 성분이 INCI 명이 있으므로, INCI 사전을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INCI 명이 정말로 없는 경우, 인정받는 출처에 나와 있는 성분의 화학명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해당 성분의 INCI 명이 없다면, 아래의 명명 시스템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성분명을 표시하면 된다. 선호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 화학물질 요약서비스 번호(CAS 번호)
- CAS 명과 같은 화학명, 또는 국제 순수·응용화학 연합(IUPAC)명
- Merck Index(최신판)(Merck & Co., Inc., Rahway, NJ, USA 출판)에 따른 상표명
- 라틴어명(속명 및 종명으로 이루어진 학명)

- 국제일반명제도(INN)명
- 유럽 또는 미국 약전명(EP, USP)
- 관용명

8.3 라벨에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

화장품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는 가독성이 좋아야 하며 해당 화장품이 사용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가독성을 유지해야 한다. 성분표에 사용해야 하는 글자 크기 또는 글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성분표는 일반적인 판매 및 사용 환경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8.3.1 함량이 많은 순서부터 내림차순으로 기재

화장품 규정 제 21.4(1)절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성분은 라벨에 함량이 많은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즉 성분표의 맨 앞에 있는 성분은 끝에 있는 성분에 비해 제품 내 함량이 더 많다. 본 규칙에 대한 예외는 본 가이드라인의 [섹션 8.3.2~8.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8.3.2 함량이 1 퍼센트 이하인 성분

함량이 1 퍼센트 이하인 성분은 함량이 1 퍼센트를 초과하는 성분을 모두 기재한 후에 임의 순서대로 기재할 수 있다. (화장품 규정 제 21.4(2)절) 함량이 적은 성분도 내림차순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성분표에 포함만 된다면 내림차순을 지킬 필요는 없다.

8.3.3 착색제

착색제는 함량에 상관 없이 함량이 1 퍼센트를 초과하는 모든 성분을 기재한 후에 임의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화장품 규정 제 21.4(2)절) 착색제는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8.3.4 향

향의 경우 "parfu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특정 향기를 발산하거나 냄새를 가리기 위해 해당 화장품에 성분이 추가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Parfum"이라는 단어는 성분표 맨 끝 혹은 적절한 다른 지점에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추가할 수 있다. 만약 향 성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 "parfu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각 향 성분을 개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8.3.5 향료

향료의 경우 "aroma"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특정 향미를 가미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화장품에 추가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Aroma"라는 단어는 성분표 맨 끝 혹은 적절한 지점에 함량의 내림차순에 따라 삽입할 수 있다. 만약 향료 성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데 "aroma"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각 향료 성분을 개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8.3.6 메이크업 및 매니큐어

다양한 색상 호수로 출시되는 립스틱, 블러쉬, 아이섀도우와 같은 메이크업 제품과 매니큐어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 라인에 사용되는 모든 착색제를 기호 "+/-" 또는 "±", 또는 "may

contain/peut contenir”라는 표현을 앞에 붙여서 나열할 수 있다.
(화장품 규정 제 21.2(2)절) 이러한 표기법은 염모제와 같은 기타 다른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8.3.7 소형 포장 또는 용기에 수용되는 화장품

화장품의 라벨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은 크기가 너무 작은 나머지 라벨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면 읽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화장품의 직접적인 용기 또는 외부 포장이 너무 작아서 정보의 가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성분표를 태그, 테이프 또는 카드에 작성하여 용기에 이를 부착할 수 있다.

8.3.8 장식용 용기에 수용된 화장품

외부 포장이 없는 장식용 용기에 수용된 화장품의 경우(예: 상자가 없는 향수병), 성분표는 태그, 테이프 또는 카드에 기재한 뒤 이를 용기에 부착할 수 있다.

8.3.9 독특한 형태의 화장품

외부 포장이 없고 화장품 자체 또는 용기의 크기, 모양 또는 질감의 특성상 용기에 태그, 테이프 또는 카드를 부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예: 입욕제 캡슐), 성분표는 전단지에 대신 기재하여 이를 판매장에서 화장품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8.4 성분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제품

일부 제품은 이중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치아 미백 기능을 주장하는 껌이 있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법에 따르면 껌은 식품이지만 치아 미백이라는 화장품 클레임을 하기 때문에 화장품 규정 또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분류 제품 중 많은 것들은 이미 다른 규정에 따른 성분 표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INCI 시스템을 이용한 성분 표기 조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화장품 규정에 따른 성분표시 요건은 식품·의약품 규정 또는 자연건강제품 규정에 의해 성분 표시·기재가 규정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추가 정보 출처

9.1 법에 대한 추가 정보

2001 년 9 월 30 일 기준 식품·의약품법의 화장품 관련 사항과 화장품 규정 및 소비자 화학 용기 규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 기관에 연락하기 바란다.

Cosmetics Program
Health Canada
269 Laurier Ave., West, 8th Floor
A.L.4908A
Ottawa, Ontario
K1A 0K9

Cosmetics Program(화장품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html>

이메일: hc.cosmetics.sc@canada.ca

전화번호: 1-866-662-0666 (toll-free with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텔레타이프라이터: 1-800-465-7735 (서비스 캐나다)

식품·의약품법의 의약품 관련 부분 문의처:

Submission and Information Policy Division

Therapeutic Products Directorate
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Health Canada

Address Locator: 3106B
Ottawa, Ontario
K1A 0K9

이메일: OSIP-BPPI@hc-sc.gc.ca

전화번호: 613-957-0368

팩스: 613-952-7719

텔레타이프라이터: 1-800-465-7735 (서비스 캐나다)

의약품 및 건강제품 웹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html>

자연 및 비처방 건강제품 관련 문의처:

Natural and Non-prescription Health Products Directorate
Health Products and Food Branch
Health Canada

250 Lanark Avenue
Address Locator 2002B
Ottawa, Ontario

K1A 0K9 (Xpress Post 를 포함한 캐나다 우편)

K1Z 1G4 (Xpress Post 를 제외한 택배)

이메일: hc.nnhpd-dpsnso.sc@canada.ca

전화번호: 613-960-8827

자연 및 비처방 건강제품

이사회: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corporate/about-health-canada/branches-agencies/health-products-food-branch/natural-non-prescription-health-products-directorate.html#a4>

소비자 포장 및 표시·기재법 및 그 규정에 따른 비화장품 제품
관련 문의처:

Competition Bureau Canada(캐나다 경쟁총국)

Place du Portage, Phase I
50 Victoria St.
Hull, Quebec
K1A 0C9

캐나다 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348-5358

캐나다 외 국가에서: (819) 997-4282

TTD(청각장애인): 1-800-642-3844

팩스: (819) 997-0324

캐나다 경쟁총국 웹사이트: <http://competitionbureau.gc.ca>

9.2 정부 문서 수령기관

캐나다 정부가 발행하는 문서

화장품과 관련된 정부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식품·의약품법, 화장품 규정 및 그 개정
- 소비자 포장 및 표시·기재법 및 그 규정, 그 개정
- 경쟁법 및 그 규정, 그 개정
- 용량·중량 및 측정법 및 그 규정, 그 개정

- 수입 상품 표시 명령

위의 모든 문서는 캐나다 연방법무부

웹사이트 [Http://canada.justice.gc.ca](http://canada.justice.gc.ca) 또는 캐나다 보건부 화장품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html>

3.1 발화거리 정보

공식 방법 DO-30, 발화거리

테스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drug-products/applications-submissions/guidance-documents/official-methods/determination-flame-projection.html>

9.4 캐나다 미터법 관행 가이드

캐나다 미터법 관행 가이드 수령처: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캐나다 표준 협회)

178 Rexdale Boulevard
Etobicoke, Ontario
M9W 1R3

전화번호: (416) 747-4044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463-6727

캐나다 표준 협회(CSA) 웹사이트: <http://www.csa.ca>

9.5 캐나다 국경 관리국

화장품과 관련한 캐나다 세관 문제 문의처: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캐나다 국경 관리국)

자동 세관 정보 서비스(ACIS) 전화

캐나다 내에서: 1 800 461-9999(수신자부담)

캐나다 밖에서: (204) 983-3500 또는 (506) 636-5064 (장거리 통화
요금 적용)

캐나다 국경 관리국 웹사이트: <http://www.cbsa.gc.ca>

9.6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

Ad Standards(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 구 Advertising Standards Canada)는 캐나다의 광고 산업 자율 규제 기구이다.

캐나다 광고 표준 협회 웹사이트: <https://adstandards.ca/>

9.7 캐나다 화장품 협회

Cosmetics Alliance Canada(캐나다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세면용품 및 향수 제조자 및 판매자와 화장품, 세면용품 및 향수 산업에 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추가 문의처:

Cosmetics Alliance Canada

420 Britannia Road East, Suite 102,
Mississauga, Ontario
L4Z 3L5

전화번호: (905) 890-5161

캐나다 화장품협회 웹사이트: www.cosmeticsalliance.ca

프랑스어 요건

퀘벡 시장을 위한 제품 라벨링과 관련한 정보 문의처:

French Language Office(프랑스어 사무소)

Government of Quebec
Tour de la Bourse
800 Victoria Place
Montreal, Quebec
H4Z 1G8

전화번호: (514) 873-6565

프랑스어 사무소 웹사이트: <http://www.olf.gouv.qc.ca>

9.9 국제화장품원료집

원료집 수령처: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PCPC) (미국 화장품협회)

1101 17th Street, NW, Suite 300,
Washington, D.C., 20036-4702

전화번호: (202) 331-1770

팩스: (202) 331-1969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PCPC)

웹사이트: www.personalcarecouncil.org

캐나다 배포자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Cosmetics Alliance Canada(캐나다 화장품협회)

420 Britannia Road East, Suite 102,
Mississauga, Ontario,
L4Z 3L5

전화번호: (905) 890-5161

팩스: (905) 890-2607

이메일: ca@cosmeticsalliance.ca